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42-2002-005493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7외 1필지 제1층 제102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2	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7, 657-209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5길 27	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연립주택 지2층 491.14㎡(주차장) 지1층 355.69㎡(2세대) 1층 281.14㎡(2세대) 2층 281.14㎡(2세대) 3층 281.14㎡(2세대) 4층 278.42㎡(2세대)	도로명주소 2014년10월13일 등기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7 2.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209		대	513㎡	2002년11월13일
			대	119㎡	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02년11월13일	제1층 제102호	철근콘크리트조 131.95㎡	도면편철장 제3책 453장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 소유권대지권 2 소유권대지권		513분의 50.29 119분의 11.67	2002년10월30일 대지권 2002년10월30일 대지권 2002년11월13일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7	소유권이전	2009년8월5일 제30323호	2009년6월8일 매매	소유자 이주은 660926-*****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7 -102 거래가액 금730,000,000원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7	근저당권설정	2014년9월5일 제28654호	2014년9월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15,200,000원 채무자 이주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5길 27, 102호(한남동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 110111-0303539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(다동) (알이자산관리부)
8	근저당권설정	2019년7월3일 제71871호	2019년7월2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75,600,000원 채무자 이주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5길 27, 102호(한남동) 근저당권자 세폴러코리아유한회사 194214-000369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(내동)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‘기록사항 없음’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42-2002-005493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7외 1필지 제1층 제102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이주은 (소유자)	660926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7 -102	7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7	근저당권설정	2014년9월5일 제28654호	채권최고액 금115,200,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	이주은
8	근저당권설정	2019년7월3일 제71871호	채권최고액 금75,600,000원 근저당권자 세폴러코리아유한회사	이주은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